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46
----------	-------

발의연월일 : 2023. 2. 10.

발의자 : 전봉민 · 박성민 · 김용판  
박대수 · 이종성 · 김태호  
정운천 · 김도읍 · 김승수  
정동만 · 이주환 · 이현승  
백종현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풍수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풍수해의 정의에 지진, 지진해일을 포함하고 있지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풍수해란 폭풍우와 홍수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해를 뜻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수해와는 차이가 있음. 특히 지진은 지각이 흔들리는 상황을 뜻하는 단어로서 일반 국민들은 폭풍우나 홍수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지진은 풍수해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 이 있음.

따라서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에

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에 지진재해를 풍수해와 구분하여 정의하고 제명은 현행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하는 등 지진재해를 명시함으로써 풍수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한다.

제1조 중 “풍수해로”를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로,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를 “대설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풍수해로”를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로 한다.

1의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5조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풍수해”를 “풍수해·지진재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각각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풍수해의”를 “풍수해·지진재해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한다.

제10조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로 한다.

제12조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풍수해보험”을 각각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풍수해보험계약”을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계약”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풍수해”를 “풍수해 · 지진재해”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풍수해”를 “풍수해 · 지진재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풍수해를”을 “풍수해 · 지진재해를”로,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풍수해보험료율”을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료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풍수해”를 “풍수해 · 지진재해”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풍수해 예방”을 “풍수해 · 지진재해 예방”으로,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풍수해 발생”을 “풍수해 · 지진피해 발생”으로, “풍수해 위험”을 “풍수해 · 지진피해 위험”으로,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 제3항 및 제4항 중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각각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풍수해보험료율”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율”로, “풍수해보험 관리지도”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제1항 및 제3항 중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각각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로 한다.

제25조의3의 제목·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각각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풍수해 예방”을 “풍수해·지진재해 예방”으로, “풍수 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지진재해보 험사업”으로, “풍수해보험 업무”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업무”로 한다.

제28조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각각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한다.

제29조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33조 중 “풍수해보험”을 각각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한 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사업”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제3항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하고,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풍수해보험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풍수해보험법</u>	<u>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u>풍수해로</u>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u>풍수해보험</u>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풍수해</u> 또는 <u>지진재해로</u> ----- -----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u>풍수해</u> ”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 <u>대설</u> · <u>지진</u> ( <u>지진해일</u> 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1. ----- ----- ----- ----- <u>대설로</u> ----- ---.
<u>&lt;신 설&gt;</u>	1의2. “ <u>지진재해</u> ”란 「자연재해 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u>지진</u> 또는 <u>지진해일</u> 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 <u>풍수해보험</u> ”이란 <u>풍수해로</u>	2.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

<p>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p>	<p>--<u>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u>-- ----- ----- -----.</p>
<p>3. ~ 7. (생 략)</p>	<p>3. ~ 7. (현행과 같음)</p>
<p>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u>풍수해보험사업</u>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p>	<p>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u> -----.</p>
<p>제4조(보험목적물) <u>풍수해보험</u>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p>	<p>제4조(보험목적물)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 ----- ----- -----.</p>
<p>1. ~ 3. (생 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5조(피보험자) <u>풍수해보험</u>의 피보험자는 제4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로 한다.</p>	<p>제5조(피보험자)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 ----- -----.</p>
<p>제6조(보험사업자) ① <u>풍수해보험</u>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6조(보험사업자) ① <u>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u>----- -----.</p>
<p>1. (생 략)</p>	<p>1. (현행과 같음)</p>
<p>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u>풍수해</u> 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는</p>	<p>2. ----- <u>풍수해·지진재해</u>----- -----.</p>

<p><b>기관이나 단체</b></p> <p>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풍수해보험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p> <p>1.·2. (생 략)</p> <p>③ (생 략)</p> <p>④ 제2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①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풍수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li> <li>3. 풍수해보험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li> </ol>	<p>-----</p> <p>② -----</p> <p>-<u>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u>-----</p> <p>-----</p> <p>-----</p> <p>-----<u>풍수해·지진</u></p> <p><u>재해보험사업</u>-----</p> <p>-----.</p> <p>1.·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풍수해·지진</u></p> <p><u>재해보험사업</u>-----</p> <p>-----</p> <p>-----.</p> <p>제8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 ① <u>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u>-----</p> <p>-----<u>풍수해·지진</u></p> <p><u>재해보험심의위원회</u>-----</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u>풍</u></li> <li><u>수해·지진재해의</u>-----</li> <li>3. <u>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u>-----</li> </ol> <p>-----</p>
---	--

4.·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장 <u>풍수해보험사업</u> 의 운영  제9조(보험기간) <u>풍수해보험사업</u> 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다만,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보험사업의 회계구분) 보험사업자는 <u>풍수해보험사업</u> 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 처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료율의 산정) 보험사업자는 <u>풍수해보험</u> 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25조제1항에 따른 <u>풍수해보험관리지도</u> 에 표시된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	4.·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장 <u>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u> 의 운영  제9조(보험기간) <u>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u> ----- -----. ----- ----- ----- ----- ----- -----.  제10조(보험사업의 회계구분) -----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u> ----- ----- -----.  제11조(보험료율의 산정) -----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u> ----- -----
--	---

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제12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행정안전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예측하고 <u>풍수해보험사업</u> 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 ----- -----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u> - ----- ----- ---.
제14조(보험 모집) ① <u>풍수해보험</u> 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보험 모집) ①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
1. ~ 3. (생략) ② 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보험에 덧붙여 <u>풍수해보험</u> 을 종합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지켜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 -----.
③ 제1항에 따라 <u>풍수해보험</u> 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u>풍수해보험</u>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모집 중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보험업	③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



<p>1.·2. (생 략)</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u>풍수해보험</u>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u>풍수해</u>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p> <p>제24조(<u>풍수해</u>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u>풍수해</u>를 예방하고 <u>풍수해보험</u> 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필요한 통계 자료를 집적(集積)할 수 있는 통계관리전산망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③ 보험사업자는 <u>풍수해보험료율</u>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 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p>	<p>1.·2. (현행과 같음)</p> <p>② ----- ----- <u>풍수</u> <u>해·지진재해보험</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풍수</u> <u>해·지진재해</u>----- -----</p> <p>제24조(<u>풍수해·지진재해</u>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① ----- ----- <u>풍수해·지진재해</u>를 ----- <u>풍수해·지진재해</u> <u>보험사업</u>----- ----- ----- ----- -----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풍수해·지진</u> <u>재해보험료율</u>----- -----</p>
---	---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 -----.
(4) 행정안전부장관은 <u>풍수해</u>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 <u>풍수해·지진재해</u> ----- ----- -----.
(5) (생략)  제25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u>풍수해 예방</u> 과 <u>풍수해보험사업</u> 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과거의 <u>풍수해 발생</u> 이력 및 향후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u>풍수해 위험</u> 정도를 지역별로 표시하는 지도(이하 “ <u>풍수해보험관리지도</u> ”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 <u>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u> 의 작성 등) ① ----- ----- <u>풍수해·지진재해 예방</u> -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u> 업----- <u>풍수해·지진재해</u> <u>발생</u> ----- --- <u>풍수해·지진재해 위험</u> -----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u> - ----- ----- -----. -----.
② <u>풍수해보험관리지도</u> 의 작성 단위·내용 등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u>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u> 도-----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의2(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③ -----  
-----풍수해·지진재해  
보험관리지도-----  
-----  
-----.

④ -----풍수해·  
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  
-----  
-----.

⑤ -----풍수해·지진  
재해보험료율-----  
-----  
-----풍수해·지진재해보  
험관리지도-----  
-----.

제25조의2(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  
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① -----  
-----풍수해·지진재  
해보험관리지도-----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  
-

② (현행과 같음)

③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



<p><u>풍수해보험</u> 제도에 관한 학술 조사·연구,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해 예방-----<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 ----- -----.</p>
<p>② (생 략)</p> <p>제27조(업무위탁) 보험사업자는 <u>풍수해보험사업</u>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u>풍수해보험</u>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7조(업무위탁)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u>----- -----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업무----- ----- ----- -----.</p>
<p>1. ~ 3. (생 략)</p> <p>제28조(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u>풍수해보험사업</u>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사업자에게 <u>풍수해보험사업</u>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28조(보고 등)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u>----- -----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u>----- ----- ----- -----.</p>
<p>제29조(분쟁 조정) <u>풍수해보험</u>과</p>	<p>제29조(분쟁 조정) <u>풍수해·지진재</u></p>

<p>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p>	<p><u>해보험</u>----- ----- ----- -----.</p>
<p>제31조(수급권의 보호) <u>풍수해보험</u>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1조(수급권의 보호)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 -----. -----.</p>
<p>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른 <u>풍수해보험</u>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u>풍수해보험</u>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 ---.</p>
<p>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① <u>풍수해보험</u>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p>	<p>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①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 ----- -----. ----- ----- -----.</p>

<p>비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u>풍수해보험</u>에 가입되지 아니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지원 규모를 조정한다.</p> <p>제35조(「보험업법」 등의 적용)</p> <p>① 이 법에 따른 <u>풍수해보험사업</u>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제119조·제124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항·제136조·제162조·제176조·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p> <p>② 이 법에 따른 <u>풍수해보험사업</u>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p>	<p>----- ----- -----.</p> <p>②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 ----- ----- ----- ----- ----- ----- -----. -----.</p> <p>제35조(「보험업법」 등의 적용)</p> <p>①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u>----- ----- ----- ----- ----- ----- ----- ----- ----- -----. -----.</p> <p>②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u>----- ----- ----- ----- ----- ----- ----- ----- ----- -----.</p>
--	--